

2015년 성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

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 대상인 비전자기록물(종이기록물)에 대하여 우리 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, 폐기 및 보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『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7조 (기록물의 폐기)
-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(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)
-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(기록물평가심의회)
- 2015년도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계획(민원여권과-26313, 2015.9.10)

II 회의 개요

- 일 시: 2015.11.6.(금) 14:00
- 장 소: 행정관리국장실(7층)
- 참석대상: 위원장 외 5명(당연직2, 위촉직2, 간사1)
- 심의안건:
 - 폐기심의대상 기록물 폐기 여부
 - 폐기 보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
- 심의대상: 2014년 12월 31일 현재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중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가 완료된 7,392권

III 추진경과 및 일정

- 2015. 9. 10. 2015년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계획 수립
- 2015. 9. 11. ~ 10. 31. 생산부서 의견조회
- 2015. 10. 5. ~ 10. 26.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검토 및 평가심의(안) 작성
- 2015. 10. 27. ~ 11. 5. 심의위원 회의안건 사전검토
- 2015. 11. 6.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

IV

소요예산

- 소요예산: 총 140,000원(금일십사만원정)
 - 산출내역: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(70,000원 X 2명)
 - 예산과목: 민원여권과, 편안함과 친절로 감동을 주는 사람 중심의 민원행정 기록물관리체계화, 기록물관리·시스템 운영지원, 일반운영비(201-01)

V

향후 계획

- 폐기 심의 완료된 한시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 집행: 2015.11. 중
 - 파쇄기 장착된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파쇄
-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류된 기록물은 재책정 기간으로 보존

▣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명단

연번	구분	성명	임기
1	위원장	행정관리국장	재임 기간중
2	위원(당연직)	총무과장	재임 기간중
3	위원(당연직)	민원여권과장	재임 기간중
4	위원(위촉직)	민**	2015.2.1. ~ 2017.1.31.
5	위원(위촉직)	이**	2015.2.1. ~ 2017.1.31.
6	간사	민원행정팀장	